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지에이코리아(주)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6. 6.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아들인 乙과 공모하여 친동생 丙이 2021.2.26. 뇌종양을 진단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2021.3.3. 친동생 丙을 피보험자로, 아들인 乙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A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다음, 2022.4.23. 丙이 뇌종양으로 사망하자 2022.6.30. 이를 사유로 A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주)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16.12.13.~2016.12.26. 기간 중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에 대해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에 머무르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7.1.4. B보험회사 등 3개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9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